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30(목)

제2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172호

나. 제 출자: 강수정의원(대표발의), 김경완의원, 조윤형의원, 윤영희 의원

다. 제출일자 : 2021. 12. 23.

라. 회부일자 : 2021. 12. 23.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복무 등에 관한 인사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신설함.

3. 주요내용

가. 법정대리 규정(안 제2조)

나. 지정대리 규정(안 제3조)

다. 직무대리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12. 23. ~ 12. 28.(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금천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안 제2조에서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60조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법정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법정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서는 법정대리, 지정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규정함.
- 본 규정은 <u>상위법에 근거하여 금천구 의회사무국의 직무 수행의 공백을</u> <u>방지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제정하는 규칙으로 적법·타당함.</u>

붙임: 관련 법령 1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